

의안번호	2126047
의 퇴 인	신현영의원
회 답 일	2023. 12. 28.
추계번호	23C5109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1억원으로, 향후 5년간 총 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 계	연평균
안 제40조제5항 (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제5항 (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0조제5항 (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공급, 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데에 따른 비용임
 -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향,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‘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으며, 2023년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함
 - 개정안에서는 종합계획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매년 실시하고 연간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안 제40조제5항 (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박선아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741	sunapark@assembly.go.kr